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장석춘의원 대표발의)

의 번 호	21063
-------------	-------

발의연월일 : 2019. 6. 20.

발의자 : 장석춘 · 문진국 · 이종배  
                강석호 · 임이자 · 박명재  
                김선동 · 경대수 · 유민봉  
                주광덕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한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창업지원계획의 수립 주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 창업지원에 관한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해당 계획을 주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창업지원계획은 각 부처에서 수립·시행하고 있는 각종 창업지원정책들을 포괄하는 종합계획적 성격과 범부처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심의기구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3년마다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합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지

원 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1항).

법률 제 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세워”를 “3년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이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